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3474
----------	------

2026년 3월 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윤기섭 의원 외 25명

나. 제안일자 : 2026년 2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
라. 상정일자

-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26년 3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윤기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충전시설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은

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선량한 입주업체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, 서울시는 입주업체들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

- 따라서, 입주업체들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입주업체의 협약사항 의무 이행 관련(안 제6조제1항)
- 입주업체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관련 (안 제8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6. 02. 20. ~ 2026. 02. 24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계기관 의견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(제6조제1항) CNG 민간 업체들과의 수익공유 협약에는 이미 ‘협약상 의무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가능’ 규정이 있으므로,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해당 협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업체의 의무이행 담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타당하다 판단되며,
- (제8조제2호)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,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약 내용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함.

1) ‘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’ 버스정책과-7700호(2026. 2. 20.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조성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관련 협약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가 조성·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에는 운송사업자, 충전시설사업자 등 다양한 입주업체들이 일정 사용료²⁾를 내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해당 입주업체들이 차고지 및 관련 시설물

2)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사용료)

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,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입주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08.11.13., 2012.1.5., 2015.1.2., 2021.3.25.>

1.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토지는 공시지가, 건축물은 감정가액)의 1000분의 10

2. 천연가스공급시설, 수소연료공급시설, 전기공급시설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
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,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9.9.29.>

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05.3.17., 2008.11.13., 2009.9.29., 2024.3.26.>

④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-이하 생략-

을 올바르게 관리·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

- 현행 조례 제6조3)에서도 입주업체들이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4)에서는 입주업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동 개정조례안은 입주업체의 주의 의무에 더해 공영차고지 사용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입주업체가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입주업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- 이와 관련하여 공영차고지에서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CNG 충전소 관리·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소홀 문제가 '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'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'⁵⁾을 수립하고 CNG충전소에 대한 관리·감독을

3)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입주업체의 의무)

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(이하 "사용시설"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-이하 생략-

4)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.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

3.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

4.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
5.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

5) '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' 보고 버스정책과-12399(2025. 4. 7.)

강화하였음

또한 서울시는 ‘서울시 CNG충전소 수익공유 표준협약서’을 만들어 불가항력적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⁶⁾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음

- 따라서,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입주업체들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운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

동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·감독 강화 및 건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시의회 지적사항('24년 행정사무감사) 1.기부액 과소 산정문제 2.협약체결 주체에 시 불참 문 3. 법인세 이중 계상 문제

6) ‘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’ 보고 버스정책과-12399(2025. 4. 7.)

- [붙임1] 서울시 CNG충전소 수익공유 표준협약서

제10조(벌칙) 제7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“회사”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“서울시”와 “시설공단”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“충전소” 운영을 위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7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동욱,
김성준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유만희, 유정희, 윤종복,
이상욱, 이종환, 임춘대,
정지웅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충전시설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선량한 입주업체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, 서울시는 입주업체들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
- 따라서, 입주업체들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입주업체의 협약사항 의무 이행 관련(안 제6조제1항)
- 나. 입주업체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관련 (안 제8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무를 다”를 “의무 및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게을리 하였을”을 “이행하지 아니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입주업체의 의무) ① 입주 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(이하 “사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<u>의무를 다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6조에 따른 의무를 <u>게을리 하였을</u> 경우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6조(입주업체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무</u> <u>및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이행하</u> <u>지 아니한</u> 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(입주업체의 의무) 입주업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“주의 의무”를 “의무 및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”으로 구체화하고, 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제2항 제6조에 따른 의무를 “게을리하였을 경우”를 “이행하지 아니한”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바,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공영주차장 관리위탁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교통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(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) ○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 대행(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)		
사업비 (당해년도)	46,646,820천원	(국비)	(시비)46,646,820천원
		기타(예산 외) [국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교통실	주차계획과	김형규 2133-2350	이상학 2133-2366	강소현 2133-2362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4예산액 (A)	2025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46,381,931	(x-) 46,646,820	(x-) 264,889	(x-) 1
사무관리비	(x-) 40,000	(x-) 50,000	(x-) 10,000	(x-) 25
공공운영비	(x-) 181,783	(x-) 188,760	(x-) 6,977	(x-) 4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0,800	(x-) 11,200	(x-) 400	(x-) 4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	(x-) 44,953,348	(x-) 45,774,889	(x-) 821,541	(x-) 2
시설비	(x-) 370,000	(x-) 0	(x-) △370,000	(x-) △100

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	(x-) 826,000	(x-) 621,971	(x-) △204,029	(x-) △25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교통량 조사 및 분석, 관광버스 주차대책 추진 비용, 민자주차장 인수 계획 자문수당, 주택가 공동주차장 심의 등 50,000,000원(용역비)	= 50,000천원
공공운영비	○ 공유재산 손해보험료(건물·시설물 공제회비) 188,760,000원	= 188,76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주차장 관련 시책 추진 11,200,000원	= 11,200천원
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	○ 공영주차장 운영대행	= 32,983,171천원
	- 인건비	= 15,407,233천원
	15,407,233,000원	
	- 경비	= 14,598,521천원
	14,598,521,000원	
	- 간접관리비	= 2,977,417천원
	2,977,417,000원	
○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대행	= 12,791,718천원	
- 인건비	= 5,280,222천원	
5,280,222,000원		
- 경비	= 5,911,290천원	
5,911,290,000원		
- 간접관리비	= 1,600,206천원	
1,600,206,000원		
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	○ 공영주차장 비품 구입	= 94,347천원
	- 점검용 차량 구입	= 53,000천원
	53,000,000원*1대	
	- 주차장 노후장비 및 비품 교체	= 41,347천원
	41,347,000원	
	○ 주차장 상가시설 개선	= 527,624천원
- 건축물 구입	= 70,000천원	
▷ 면목유수지 전기설비 구입	= 35,000천원	
35,000,000원		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	▷ DDP패션몰 변압기 구입 35,000,000원	= 35,000천원
	- 기계장치 구입	= 450,100천원
	▷ 훈련원공원 주차장 냉각탑 2대 구입 225,050,000원*2대	= 450,100천원
	- 공기구비품 구입	= 7,524천원
	▷ 전자결제 기안기 업그레이드 23,989,361원*1.88%	= 451천원
	▷ 보안장비(VPN) 교체 2,536,500원*2식	= 5,073천원
	▷ DDP패션몰 방송실 에어컨 구입 2,000,000원*1대	= 2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이용시민의 공공편익 증진 및 우리시 주차정책과의 연계성 확보
- 주차장 운영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대행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
- 주차장 상가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시 세입 증대

□ 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('22.1.1~'26.12.31.)

□ 사업내용

- 공영주차장 운영대행
 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 - 지원대상 : 서울시설공단
 - 사업규모 : 총 129개소 18,003면
 - 사업내용 :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, 미납주차료 징수, 민간위탁주차장 지도·점검
-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대행
 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 - 지원대상 : 서울시설공단
 - 사업규모 : 상가·창고 등 21개소 599점포

- 사업내용 : 공영주차장 상가시설 입찰 및 사용수익허가,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, 체납관리 등

□ 추진경위

○ 공영주차장 운영대행

- 1984. 8. 1.: 공영주차장 위탁(179개소 6,625면)
- 1991. 5.24.: 노상주차장 중 수익성이 높은 주차장의 자치구 관리
- 1995. 6.23.: 노상주차장 자치구 이관
- 2000.11. 1.: 주차장 민간위탁
- 2007.11. 1.: 봉화산역, 수락산역, 한강진역, 화랑대역 공영주차장 위탁
- 2010.11. 1.: 학여울역, 영등포구청역 공영주차장 위탁
- 2013. 7. 9.: 동대문지하주차장 위탁(민자건설 및 기부채납)
- 2014.11. 1.: 잠실역 지하공영주차장 급지조정(3급지→1급지)
- 2017. 7. 1.: 공단운영 주차장 총143개소(직영 50개소, 재위탁 20개소, 민간위탁 73개소)
- 2018. 7. 1.: 공단운영 주차장 총138개소(직영 47개소, 재위탁 19개소, 민간위탁 72개소)
- 2019. 7. 31.: 공단운영 주차장 총136개소(직영 47개소, 재위탁 19개소, 민간위탁 70개소)
- 2020. 12. 31 : 공단운영 주차장 총132개소(직영 47개소, 재위탁 18개소, 민간위탁 67개소)
- 2021. 10. 31. : 공단운영 주차장 총132개소(직영 50개소, 재위탁 18개소, 민간위탁 64개소)
- 2022.1.1~2026.12.31. : 공영주차장 대행 재협약
- 2022. 9. 30.: 공단운영 주차장 총130개소(직영 49개소, 재위탁 19개소, 민간위탁 62개소)
- 2023. 9. 30 : 공단운영 주차장 총 130개소(직영 48개소, 제3자위탁 82개소)
- 2024. 11. 30.: 공단운영 주차장 총 129개소(직영 46개소, 제3자위탁 83개소)

○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대행

- 2016. 4. 8.: 서울시설공단 상가인수단(TF) 구성·운영
- 2016. 4.11.: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추가인수계획(행정1부시장 방침)
- 2016. 6.28.: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 간 위·수탁 협약체결

- 2016. 7.14. :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
- 2016. 9. 1. : 동대문지상상가 서울시설공단 인수·운영
- 2017. 6.30. : 훈련원공원주차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인수·운영
- 2022.1.1~2026.12.31. : 공영주차장 대행 재협약
- 2023. 9. 30. : 주차장 상가시설 20개소 630점포
- 2024. 11. 30. : 주차장 상가시설 21개소 599점포

2025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6,646,820	
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	2025.01~2025.12	45,774,889	회계연도 예산액의 월별 집행후 정산
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	2025.01~2025.12	621,971	회계연도 예산액의 월별 집행후 정산
사무관리비	2025.01~2025.12	50,000	회계연도 예산액의 월별 집행후 정산
시책추진업무추진비	2025.01~2025.12	11,200	회계연도 예산액의 월별 집행후 정산
공공운영비	2025.01~2025.12	188,760	회계연도 예산액의 월별 집행후 정산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22년도	○ 공영주차장 130개소(16,767면), 상가시설 19개 (624개 점포)
2023년도	○ 공영주차장 130개소(16,833면), 상가시설 20개 (630개 점포)
2024년도	○ 공영주차장 129개소(18,003면), 상가시설 21개 (599개 점포)

향후 기대효과

-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
- 서울특별시의 정책 실무추진(대행)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시설유지 관리 추진
- 주차장 상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변상권 활성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1	(x-) 44,870,767	(x-) 0	(x-) 0	(x-) 44,870,767	(x-) 44,181,186	(x-) 300,000	(x-) 389,581
2022	(x-) 41,844,162	(x-) 300,000	(x-) 0	(x-) 42,144,162	(x-) 41,956,155	(x-) 141,305	(x-) 46,702
2023	(x-) 45,761,999	(x-) 141,305	(x-) 740,000	(x-) 46,643,304	(x-) 44,441,486	(x-) 1,201,693	(x-) 1,000,125